

의안번호	제 634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서동학 의원 등 8인
발의연월일	2021년 1월 11일

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서동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3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1월 11일

발의자 : 서동학, 김기창, 박우양,
연철흙, 전원표, 황규철,
연종석, 이상식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 및 「대기환경보전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수정·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명 띄어쓰기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2조)
-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(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)
-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9조)

3. 조례안 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해당없음
- 관련부서 협의 :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
-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5조” 를 “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조” 로, “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2조제6호” 를 “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9호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아니하고” 를 “않고” 로 한다.

제4조 중 “하여서는 아니 된다 ” 를 “해서는 안된다” 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아니하는” 을 “않는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초과하거” 를 “넘거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단서 중 “이내에 한 한다” 를 “이내로 한정한다” 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공익근무요원” 을 “사회복무요원” 으로, “이하” 를 “이하” 로 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 중 “아니한” 을 “않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초과한” 을 “넘는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제4 조” 를 “제4조” 로, “초과한” 을 “넘는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4호 중 “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94조제5항제5호” 를 “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94조제2항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“차고지”라 함은 「<u>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</u>」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·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「<u>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</u>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말한다.</p> <p>6.·7. (생략)</p> <p>8. “정차”라 함은 터미널·차고지·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<u>아니하고</u>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.</p> <p>9. (생략)</p> <p>제4조(공회전의 제한) 제3조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<u>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「<u>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</u>」 제5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</u>」 제2조제9호----- ----- -----.</p> <p>6.·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----- <u>않고</u> ----- -----.</p> <p>9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공회전의 제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서는 안된다.</u></p>

제5조(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) 제4조에 따라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4.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℃를 초과하거나 영상 5℃ 미만인 경우로서 냉·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
5.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.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 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. 다만, 대기의 온도가 영하 5℃ 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에 한한다.

제6조(공회전 단속공무원) ① 도지사는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(「병역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)을 공회전 단속 공무원(이하“단속담당공무원”이라 한다)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7조(공회전의 단속) ① 단속담당 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

제5조(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) -----

----- 않는 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
넘거-----

5. -----

----- 이내에 한정한다.

제6조(공회전 단속공무원) ① ---

----- 사회복무요원-----

이하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공회전의 단속) ① -----

----- 않은

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.

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회전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에 따라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(비디오 테이프 등)를 확보하여야 하며,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.

③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4 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자동차 운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 2인 이상의 단속공무원이 연서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.

제9조(권한의 위임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한다.

② -----

넘는 -----

③ -----

제4조-----
넘는 -----

제9조(권한의 위임) -----

1. ~ 3. (생략)

4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94조제
5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
· 징수업무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94조제
2항-----

관계법령

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
제5조(면허 등의 기준)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
2. 최저 면허기준 대수(臺數), 보유 차고 면적, 부대시설,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, 교통사고 유무,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)을 정하여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통보받은 시·도지사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·공고하고,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또는 재산정이 있거나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의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으로 인하여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, 보유 차고 면적, 부대시설,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·공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8. <생략>
9. “공영차고지“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.
 - 가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“라 한다)
 - 나.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 - 다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
 - 라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
<이하 생략>

□ 대기환경보전법

제94조(과태료) ① <생략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
- 1의2.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
2.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
3.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
4.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,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·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, 저공해엔진(혼소엔진을 포함한다)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5.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·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·제3호에 해당하는 자
<이하 생략>